



선박 컨테이너 설계와 고객명단의 영업비밀 해당성과 부정사용 여부 관련 항소심 사건

01 Smith v. Dravo Corp., 203 F.2d 369¹⁾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	사건번호	10683
판결 일자	1953.4.10.	판결 결과	일부 파기, 일부 유지
원고 (항소인)	스미스 (Smith)		
피고 (피항소인)	드라보 코퍼레이션 (Dravo Corp.)		
참조 법령	Restatement, Torts, Sec. 757, comment.		
참조 판례	Eckert v. Braun, 7 Cir., 155 F.2d 517, Klaxon Co. v. Stentor Electric Mfg. Co., Inc., 313 U.S. 487, 61 S. Ct. 1020, 85 L.Ed. 1477, A. O. Smith Corp. v. Petroleum Iron Works Co., 6 Cir., 73 F.2d 531, 538		
영업비밀	화물운송컨테이너의 설계 정보, 고객 명단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제한적인 목적의 공개, 신뢰 위반, 부적절한 사용		

02 사건 개요

1940년대 초반 조선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선박의 화물운송컨테이너에 대한 설계를 구상했다. 1944년에 이와 같은 정보를 업계지를 통해 출판하고 발표하자 관심을 보인 뉴욕의 대표적인 선박회사 에그윌리네스와 함께 이를 생산하게 되었다.

1946년 원고는 선박사고로 사망했다. 비슷한 시점에 피고는 원고의 컨테이너 구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에그윌리네스를 통해 정보를 구했다. 그리고 에그윌리네스의 제안으로 원고의 동부지역 대표였던 코완과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1) 미국 판례는 해당 법원의 사건 번호와는 별개로 판례를 인용하거나 검색할 때 사용하는 표시 형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판례 인용 형식은 “원고 v. 피고, 판례집 번호, 판례집 수록 페이지 번호, (판결 연도)”로 구성된다. 이하 같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Smith와 피고 Dravo 간의 사건으로, 미연방 판례집(Federal Reporter), 2번째 시리즈(F.2d로 약칭됨) 203권, 369페이지에 수록된 판례라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점차 원고의 컨테이너 사업 전체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피고의 관심을 본 코완은 피고에게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내주었다. 원고들은 로열티를 비롯한 협상을 계속하려 했지만 피고는 거절하였고 사업 양도 제안도 완전히 거절했다.

그 후, 1947년 피고는 에그윌리네스와 함께 원고의 설계와 한 가지 특성을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컨테이너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비밀유지 관계를 전제로 원고의 설계와 계획,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피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 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원고가 보유한 설계 정보와 고객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 비밀이 아니었으며, 고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였으나 피고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원고의 설계는 조사를 통해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은 용인되어야 한다.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04 판결 요지

한 사람의 사업에 연관된 모든 지식과 정보는 비밀로서 보유될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설계 계획과 고객 자료는 명백히 이러한 지식의 범주에 포함되는 영업비밀의 대상이다.

원고가 컨테이너 설계에 관해 출판한 적은 있으나 그 출판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원고의 설계를 자세히 공개한 바 없다. 따라서 “해당 자료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한 지방법원의 사실인정은 명백한 오류이다.

또한, 영업비밀이 실험 기타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본질을 가진다고 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것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획득하는 자를 상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설계는 육안으로 살펴봐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었으며 피고는 실제로 이것을 충분히 조사한 바도 없다.

비밀유지의무의 존재 여부는 영업비밀의 소송의 전제가 된다. 원고가 피고와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피고들이 컨테이너를 구매함에 있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알고 이해했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도면을 입수하기 전까지 컨테이너 설계를 시작한 바 없으며, 에그윌리네스의 요청에 따라 원고 컨테이너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원고와 피고 제품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구조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05 Key Point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실험 기타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것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획득하는 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드시 명시적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한 목적 하에서 제한된 범위로만 사용해야 함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